

『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에 상충되고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

3. 주요내용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(안 제4조)
-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해 해당 조항 삭제(안 제17조)
- 사용료 반환 규정 개선(안 제20조)
 - 주민들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를 위해 반환율 명시
-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(안 제21조)
 - 분쟁을 없애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명시
-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를 위한 해당 조항 삭제(안 제2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민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에 상충되고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제명을 「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」에서 「구미시읍·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7조, 안 제20조, 안 제21조에서 귀책사유별 사용료 반환 규정 및 사용료 감면규정 등을 규정하였고,
- 조례 제23조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

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, 사용료반환규정 개선,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 및 손해배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조항 삭제 등 상위법에 상충되고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 시 주민들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등을 완화해 줄 것으로 판단되나, 안 제20조제2호 규정은 집행기관 표준안에 따라 수정하여 일관성 있는 반환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